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CA, ACF, ACI, ACF-RA, BFA, CNA-RA, CNA-RB, COG-RA, ECC-RA, EGF-RB, EGI-RA, IGN, IGO-RA, IGP-RA, IGT-RA, IKA-RA, IKB-RA, IKC-RA, IOE-RA, IOE-RB, IOI-RA, IPD-RA, IQB-RA, IQD, IQD-RA, IQD-RB, JEA, JEA-RA, JEA-RD, JEE, JEE-RA, JEC-RA, JFA, JGA, JGA-RA, JGA-RB, JGA-RC, JGB-RA, JHF, JHF-RA, JOA-RA, JPC-RA, JPD-RD, KBA-RC, KEA, KEA-RA, KLA-RA

책임 사무실: Office of the Deputy Superintendent; Office of the Chief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Office of the Chief of Strategic Initiatives

학생의 권리와 의무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 목적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 JFA, *학생의 권리와 의무(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적용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배경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학생이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깊은 감사는 학생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는 기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III. 정의

A. B.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는 MCPS Regulation, JHF-RA, *학생의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Student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 *사이버 불링/사이버 폭력(Cyberbullying)*은 JHF-RA, *학생의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Student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C. 전자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에 관해서는 MCPS Regulation JHF-RA, *Student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D. MCPS 소유지(*MCPS property*)란 MCPS 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부지, MCPS 버스, 기타 MCPS 차량, 시설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고 MCPS 가 지원하는 활동 시설 및/또는 부지 등을 포함한 모든 MCPS 학교 또는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 E. 학부모/후견인, 보호자(*Parent/guardian*)는 생물학적 부모, 입양 부모, 위탁 부모, 또는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할 권한이 있는 법적 후견인이거나 법적으로 지정된 개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명령에 따라 친부모 또는 양부모를 대신하여 학생의 교육적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 F. 학교장(*Principal*), 이 규정에서의 학교장은 학교 교장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 G. 합리적 믿음(*Reasonable belief*) 또는 타당한 이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과 그 사실로부터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형성된 믿음입니다.
- H. 흡연(*Smoking*)은 MCPS Regulations IGO-RA: *학생이 관련된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남용(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volving Students)*과 COF-RA, *MCPS 소유 지역 및 영역에서의 알코올, 대마초, 담배, 기타 약물(Alcohol, Cannabis, Tobacco, and Other Drugs on MCPS Property)*, *MCPS 학생 행동 규범(Student Code of Conduct in MCPS)*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V. 행정절차

- A. 무상 공립교육
1. Montgomery County 거주자로 교육위원회 Policy JEA, *거주, 학비, 등록(Residency, Tuition, and Enrollment)*에 명시된 바와 같은 모든 학생은 무상으로 적절한 공립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¹
 2. Montgomery 카운티에 거주하는 장애가 있는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21 세까지 무상으로 적절한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¹ 4 세 이상의 아동으로 가족이 수입자격에 해당할 경우, 학비를 내지않고 공립 프리스쿨에 다닐 수 있습니다.

B. 학생의 교섭에의 참여와 학교 행정

1. 학생에게 각 과목의 개괄적 목표와 학생의 학업평가가 이루어질 학습평가기준을 알려야 합니다. 학생은 교실활동에 참여하고 교실의 규칙과 기대 및 절차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2. 학생은 왕따, 희롱, 협박이 없는 환경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습을 위한 안전한 장소이어야 합니다. 왕따, 희롱, 협박은 언어 행위, 신체적 행위, 서면으로의 행위(텍스트/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기기 사용 포함)를 말합니다.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신고 절차는 MCPS Regulation, JHF-RA, 학생의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Student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3. 학생이 추천한 교육 프로그램

학생은 또한 교사와 상담하여 학기 중에는 추가/대체 프로그램을 또는 학기 외에 학생들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세미나, 회의, 소규모 코스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 a) 학생은 학교장과 교직원과 함께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됩니다.
 - b) 계획하는 프로그램은 교육구의 전략계획 기초, 학교의 교육 목표,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지의 여부 그리고 논란이 많은 주제 간의 균형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정책 및 규정
 - a) 교육위원회 정책 BFA, *Policy setting* 에 따라 학생대표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위원회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사무기관, 부서, 위원회(회의의 학생대표를 포함) 등 책임담당 기관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또는 학생이 시정을 요구하여 고려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b) 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 규정과 규칙의 개정과 개발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c)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주요 지역 학교 정책 또는 규칙을 개발 또는 개정하기 전에 학생이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학생에게 편리한 위치에 사본을 게시하여 학생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직원은 가능한 모든 기회에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 주요 정책이나 규칙에 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 d) 주요 정책과 규칙의 개발 또는 재검토에 의견을 제공하고 싶은 학생은 학교장 또는 **Student Leadership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디렉터에게 연락합니다.

C. 사생활 보호권

1. 학생은 가족 내의 사건, 개인의 습관, 관계, 취향, 특징, 결정, 문제 또는 본인이나 가족이 친구들과 비교되는 등의 개인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토론, 과제물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교습 목적을 달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학교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학생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으며 기대할 권리도 없습니다. 학생은 전자기기에 관한 규정 **MCPS Regulations IGT-RA, 컴퓨터 시스템, 전자정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User Responsibilities for Computer Systems, Electronic Information, and Network Security)**와 **COG-RA, 개인의 모바일 기기 사용(Personal Mobile Devices)** 및 기타 적절한 규정과 규칙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3. **MCPS** 버스를 포함한 학교 소유지에서 학생은 안내 표시와 함께 공공장소 내에서 공시된 오디오와 비디오카메라 감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감시를 통하여 모은 증거에 근거하여 어떤 학생이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D. 출결석

1. 학생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며 학교와 수업에 늦지 않도록 출석해야 합니다. **MCPS** 출결석에 관해 명시한 **MCPS** 규정은 **MCPS Regulations JEA-RA, 학생의 출결석(Student Attendance), JGA-RB, 휴학과 퇴학(Suspension and Expulsion), JEC-RA, 학생 퇴실과 퇴교(Student**

Withdrawals from Classes and School), IQB-RA, *교과과정 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입니다.

2. MCPS Regulation IKA-RA, *Grading and Reporting* 에 따라 인가된 결석 여부에 상관없이 수업에 빠진 경우 해당 수업에서 제공된 과제물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MCPS Regulation IKC-RA: *Grade Point Averages(학점 평균-GPA)와 Weighted Grade Point Averages(가중 평균 학점-WGPA)*를 봅시다.

E. 학생회

1. 학생은 학생회를 구성하며 학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회를 통해 학교에 대해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는 효과적인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학생회를 통해 학생은 학생회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학교의 답변을 수업일 5 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회의 개정이나 회칙이 채택되지 않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학생회에 5 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을 합니다. 만약 내용이 광범위하거나 복잡할 경우, 학교는 학생회 대표와 상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 설명의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3. 학생회의 학생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인 후원교사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회칙에 새 회칙이나 개정안을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회칙은 학교장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은 회칙이 법과 정책 또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학교장의 판단에 효과적인 학교행정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학교장이 회칙이나 개정된 회칙 승인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적은 통보를 받게 되며 회칙에서 학교장이 명시하는 부분을 수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4. MCPS 학교에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학생회 회칙상의 기준을 갖춘 학생이면 누구나 학생회 임원으로 출마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학교의 허락을 받고 학생회 활동으로 수업을 빠지게 될 경우는 학생의 결석을 허락된 결석으로 인정합니다. 빠진 수업과 과제물 이수는 학생의 책임입니다.

6. 학생회는 교습이나 다른 학교 행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는 이 특권을 남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7. 학생회 운영 위원회, 학생회 후원 교사, 학교장은 정기적으로 학생회 조직의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8. 봄에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만나 새 학사연도의 후원자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게 됩니다. 후원 교사 임명 전, 학생의 의견에 신중한 고려사항을 제공합니다.

F. 탐구와 다음의 자유—

1. 표현

a) 학생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1) 학생은 논쟁이 되는 주제의 다양한 자신의 관점을 주와 카운티 교과 자료의 한계 내에서 발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2)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대체되는 의견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고유 의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3)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b) 학생은 다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 (1) 학생은 수업에서 명시되는 주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교실 내의 토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피력되도록 참여해야 합니다.
- (2) 학생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의 시각을 표현하는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3) 학생은 긍정적 학습 및 업무 환경과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유지라는 목표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외설, 중상, 비방, 불경, 저속한 언어 또는 선정적이거나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언어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청원

- a) 학생은 학교와 만나서 잘못된 이해를 정정하고 청원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를 주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b) 학생은 학교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 교습시간 외에 청원서를 돌릴 권리가 있습니다.
- c) 학생은 청원서의 내용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거나 외설, 중상, 비방, 불경, 저속, 선정적이거나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언어, 학교행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원 상황이 책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에서 청원서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d) 이 경우, 학생은 5 일 이내에 응답 내용을 게재하거나 처음에 작성한 사람이 확인된 경우, 작성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3. 출판, 공연, 정보 자료

- a) 학생은 출판, 연주,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를 존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1) 학생은 신문, 기념 앨범, 문예지 같은 학교 후원 출판물 그리고 교내 연극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학교 후원 활동을 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 (2) 학생은 담당교사의 허가 아래 학교가 후원하는 출판물과 발행물을 정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 (3) 학생은 후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출판물과 MCPS 에 재학 중인 학생이 출판하고 판매하는 제작물을 학교의 후원 없이 배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 (4) 학생은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학생의 게시물에 적용하는 같은 규정과 절차로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출판물과 발행물을 지정된 게시판, 벽 또는 포스터를 붙이는 일반 공간에 붙일 권리가 있습니다.
- (5) 학생은, 학교가 책정한 절차 또는 Section F.3(f)(1)에 따라 학교의 후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 이의제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Section 0, *이의제기, 항의 절차, 적법 절차(Appeals, Complaint Procedure, Due Process)*에 있습니다.

b) 후원/후원 교사

- (1) 학교장은 학교가 후원하는 각 출판/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담당하는 교사/후원 교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a) 적합한지와 자료의 구성에의 지침을 제공하며 타인을 비판하는 글의 사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합니다.
 - (b) 학생들이 학생의 출판물, 퍼포먼스, 정보자료의 내용을 관리하는 규정에 따른 지침서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학생과 함께 일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학교가 후원하는 모든 학생 출판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중, 고등학교 학업 언론 연합과 MCPS 규칙과 규정 및 기타 저널리즘 전문 기준에 의한 중, 고등학교 기준에 따릅니다..
 - (b) 학교 신문이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며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신문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3) 학교 후원 교직원들은 학생 기자에게 영향을 주어 학교나 교육위원회 공직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후원 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보복으로 해고, 처벌, 훈육, 재임명, 이동할 수 없습니다—

- (a) 이 규정에서 승인한 행동에서 연관된 학생을 보호하는 행동 또는,
 - (b) 위반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연방 헌법 제 1 차 수정안(First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Maryland 권리선언 40 조항(Article 40 of the Maryland Declaration of Rights) 규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 c) 학생에 의한 출판 또는 기타 정보 자료의 배포:
- (1) 상업적 광고 또는 안내, 정치적 운동 자료와 종교적 자료를 포함한 정보 자료의 배포는 MCPS Regulations KEA-RA: 정치 운동의 참여와 정치적 유인물 배포(*Participation in Political Campaigns Distribution of Political Materials*)와 CNA-RA, 정보유인물과 안내물 전시 및 배포(*Display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al Materials and Announcements*) 및 MCPS Regulation CNA-RB, 광고(*Advertising*)에 따릅니다.
 - (2) 학교장은 학교가 후원하는 그리고 후원하지 않는 학생의 출판물, 작품, 기타 정보자료의 시기와 시간, 장소, 배포방법 등을 책정해야 합니다.
- d)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제작물 또는 출판물의 배포 또는 다른 학생이 제공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지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외설, 중상, 비방, 불경, 저속, 선정적이거나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헐뜯는 언어를 포함한 경우.
 - (2) 부적절한 사생활 침해의 경우.
 - (3) 학생들에게 확실한 위험을 조성할 경우—

- (a) 불법적 행동에 따라 교육위원회 정책을 범하거나 MCPS 규정 또는 규칙을 범할 경우, 또는
 - (b) 공교육의 행정질서를 방해하는 자료와 심각한 혼란 “심각한 혼란(Substantial disruption)” 이란 폭동, 등교 및 수업 거부, 연좌농성, 건물파괴, 퇴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에 의한 학교행정방해, 무질서한 행동 등을 의미합니다.
- (4) 이는 주와 연방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에는 건강 또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잠재적 가능성을 포함하거나, 학생의 마약, 음주, 대마초, 흡연을 옹호한다고 여겨지거나 모든 형태의 흡연, 폭력, 섹스, 불법적인 인종차별 또는 위법활동을 옹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지침사항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토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e) 광고 분야

- (1) 학교가 후원하는 출판물과 발행물 광고는 관해서는 MCPS Regulation CNA-RB, *Advertising* 에서 따라 승인합니다.
- (2) 특히 광고가 출판물의 다른 곳에 있을 경우, 이 부분에 광고는 편집자, 학교, 교육위원회의 견해나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사전에 명기해야 합니다.
- (3) 광고는 "광고"로 명시되어야 하며 광고를 후원하는 사람 또는 회사의 실명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f) 학생 제작물 발표, 출판물, 학생이 배포하는 자료의 중단 절차

- (1) 학교장은 규제 전에 지나친 지연 없이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가 후원하는 제작물 발표, 출판물, 그 일부분이 학교장이나 학교 후원을 거부당한 경우, 학교장은 학교일 2일 이내에 관련된 학생과 관련사항의 글을 결정한 학생을 만납니다. 실행 가능한 경우,

학교장의 결정은 출판물 또는 발표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정의 서면 사본을 관련 학생과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OSSI)에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장의 결정은 Section O, *Appeals, Complaint Procedure, Due Process* 의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2) 만약 학교장이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출판물 배부 중단해야 할 경우, 또는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발표를 중단해야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일 2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제공해야 하며 배부 또는 발표에 관련된 학생과 OSSI 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장의 결정은 Section O, *Appeals, Complaint Procedure, Due Process* 의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G. 집회의 자유

학생은 자신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모이고 평화롭게 시위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1. 학생은 학교장에게 다음 결정을 상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 a) 활동이 학교 수업시간에 있을 경우,
 - b) 만약 학교장이 학교시간에 있을 경우,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 방해가 생길 것이라고 여길 경우, 학교 수업시간 외 또는 점심시간에 행해지는 활동을 포함한 모임의 시간과 장소
 - c) 만약 교직원이 활동을 감독하도록 지정될 경우, 요구되는 감독형태.
- 2. 학생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a) 활동이 질서 정연한 것이 되도록 교직원과 협력합니다. 그리고
 - b) 결석한 수업의 보충을 해야 합니다.

H. 애국심 표현

1. 학생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a)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기회를 포함한 적절한 개회절차
 - b) 적절한 경우, 조회 또는 학교 프로그램 전에 국민의례 등의 애국심 표현 활동하기
 - c)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의 일환으로의 애국심 표현 활동
 - d) 애국심 표현 활동 계획과 출판에 참여

2. 학생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a) 학생은 애국심을 표현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으며 이를 안 함으로 처벌을 받거나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다.
 - b) 다른 학생들이 애국운동에 참여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방해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I. 종교의 자유

1. 학생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a) 학생은 학교가 후원하는 종교의식이 포함되지 않은, 종교에 중립적인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b) 학생은 수업 중 혹은 졸업식이나 조회 등의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종교적 신념의 지지가 없는 학습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 c)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학생 기도 모임 같은 종교적 활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학교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학생 종교 동아리나 기도그룹은 다른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학생 기관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3. 학생은 MCPS 가이드 라인에 따른 종교 음악 등의 축제 콘서트에 참석하거나 개최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학생은

선택과목으로 종교를 다루는 역사 또는 비교 종교를 선택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의 프리젠테이션은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특정 종교적 신념을 대변해서는 안됩니다.

4. 학생들은 교실 파티나 자유 시간에 가족의 종교 및/또는 다른 관행과 상충되는 자료나 관행을 수반하는 행사와 같은 비교과 활동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MCPS 는 종교적 및/또는 다른 이의에 따른 필수 교과과목의 수업 또는 교과과목 수업 자료의 사용에 대한 면제 요청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J. 클럽, 팀 그리고 학생 단체

1. 학교 후원(School-sponsored)

- a) 학생은 교내 클럽, 팀, 그리고 다른 학생단체를 구성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참석에 영향을 주는 교육위원회의 정책과 MCPS 학교의 규정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b) 학생회는 교습이나 다른 학교 행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학교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주어진 특혜를 남용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 c) 학생의 참여할 권리는 다음에 따라 학교장이나 활동 후원자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 (1) 규칙과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 (2) 윤리적 또는 법적 기준을 위반하거나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 MCPS 소유지 내와 소유지 외에서의 적절한 행동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을 고려한 후, 학생의 동아리, 팀, 학생 기관의 지도적 위치의 박탈
 - (a) 이전 학생 태도의 검토
 - (b) 시간경과
 - (c) 사건 후 학생의 행동

(d) 학생과 또는 학교 커뮤니티 사람들의 의견
(적절할 경우)

- d) 선거 선출, 임명을 원하는 학생, 또는 각 클럽, 팀 또는 학생 위원회의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 (1) 인격/도덕적, 법적으로 올바른 본이 되어야 합니다.
 - (2) MCPS 소유지 내외에 모든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 그리고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학교 비 후원(Non-school-sponsored)

학생은 다음의 책임을 충족할 경우, 교습 외 시간에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회의를 개최할 권리가 있습니다:

- a) 모임은 안전과 보안의 위협하지 않습니다.
- b) 모임이 자발적으로 학생이 주도하며 학교가 후원하는 클럽으로 표현하거나 간주하지 않습니다.
- c) 학교 또는 교육구 교직원의 후원이나 지원이 없을 경우. 그러나 안전을 위해 교직원이 감독할 경우도 있습니다.
- d) 교육구 교직원이 회의를 인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 e) 회의가 학교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가 발생 가능성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f) 학교 외부인사가 활동을 지도, 인도, 관리 또는 통제하거나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 g) 공공 자금은 학교가 후원하는 동아리 및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회의 발표 수단 및 회의 공간 제공에 따른 부수적 비용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K. 차별 금지

1. 모든 학생은 상호 간의 존경심을 갖추어 처신해야 하며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Board Policy ACA, *Nondiscrimination, Equity, Cultural Proficiency*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체 또는 예상되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모든 증오/폭력과 차별에 대한 법률은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되지 않습니다.
3. 학교가 후원하는 학생단체는 학교 규정 시행에 따른 결정에서 동등하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L. 복장 및 몸차림

1. 학생은 학교에 학교의 훈육 규정에 열거된 복장과 몸차림에 따라 학교생활에 적절한 복장과 몸치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학생은 아래의 section 3 에 명시한 요건을 따를 경우, 종교 또는 종교적 메시지를 담은 복장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학생은 다음의 열거한 경우가 아니면 복장 및 몸차림에 대하여 훈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a) 학교환경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b) 교육환경을 실제로 방해하는 경우
 - c)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협할 경우
 - d) 교과 수업이나 활동의 합당한 요구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e) 폭력 조짐이 연상되는 경우
 - f) 외설, 저속, 음란하며, 노출이 심하고, 성적인 자극이 우려되는 경우
 - g) 담배, 알코올, 약물 또는 성활동을 육성할 경우

M. 학생 기록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은 필요한 경우, 해석해 줄 수 있는 학교 담당 직원과 회의를 할 때, 학생의 누적기록을 열람한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기록의 유지와 열람은 MCPS Regulation JOA-RA, *학생기록(Student Records)*에 따릅니다.)

N. 수색과 압수

학생과 학생의 라커/사물함,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영역에 주차한 자동차는 MCPS Regulation JGB-RA, *수색과 압수(Search and Seizure)*에 명시된 합리적인 신념과 절차에 따라 지정된 수색자가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O. 이의제기, 항의 절차, 적법 절차

학생은 훈육, 고충절차, 차별에의 불만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² 이러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칙은 비전, 미션, 주요 목적, 교육위원회의 주요 가치 그리고 현존하는 법과 규정에 일치해야 합니다.

학생은 일반인의 MCPS Regulation KLA-RA, *Responding to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the Public* 에서 설명한 불평사항 해결추구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1. 학생은 먼저 학교장³ 또는 대리인과 함께 비공식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⁴
2. 학생의 염려나 불만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생은 MCPS Regulation KLA-RA, *반 질문과 불평사항에 관한 답변(Responding to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the Public)* 명시된 대로 결정을 재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² MCPS 는 Board Policy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 명시된대로 실제 또는 예상하는 개인의 특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Mr. Gregory S. Edmundson, coordinator,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Room 55, 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 240-740-3215 또는 SWC@mcpsmd.org 에게 연락합니다.

³ 교장에 대한 성희롱 신고의 경우는 다음으로 신고합니다. 담당자: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 240-740-2890 또는 DCI@mcpsmd.org.

⁴ 성희롱 신고를 조사하는 동안 신고자는 성희롱자와의 일대일 또는 어떠한 형태의 대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P. *Mongomery County Public Schools 학생의 권리와 의무 (Student's Guide to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의 배부

학생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 안내서를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이 책자는 학교에서 제공되며 학교 커뮤니티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학부모/후견인에게 제공됩니다.
2. 지침 변경과 권리와 의무의 이해와 충족을 돕기 위한 상담이 준비되어 있음을 학생과 교직원이 알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책임입니다.
3. 최소한, 지침의 복사본이 학교장 사무실, 카운슬링 사무실(guidance department), 학교 도서관/미디어센터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구 학생의 권리와 의무 지침서(A Student's Guide to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의 전자판은 MCPS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필수 문서에 대해 MCPS Regulation KBA-RC, *번역과 통역(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번역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121, 7-308;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8.01.03 and 10; 09.12.23.01, A Student's Guide to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MCPS, Student Code of Conduct in MCPS, MCPS Guidelines for Respecting Religious Diversity, MCPS Guidelines for Students: Gender Identity

규정 변경사: 새규정, 1994년 8월 19일; 1997년 6월 27일 갱신, 1998년 7월 20일 갱신; 200년 5월 24일 갱신; 사무실 이름 변경 2000년 6월 1일; 2002년 5월 23일 갱신; 2004년 4월 13일 갱신; 2006년 1월 25일 갱신; 2007년 6월 27일 갱신, 2008년 6월 13일 갱신; 2011년 8월 8일 갱신; 2014년 12월 19일 갱신; 2016년 9월 27일 갱신; 2018년 7월 24일 실질적 갱신; 2018년 12월 4일 갱신, 2021년 8월 09일 갱신, 2023년 10월 23일 실사 개정.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진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Office of Well-being, Learning, and Achievement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5630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